

강릉시 공고 제2024-558호

## 건축물대장 지번 직권변경 및 직권정정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상의 지번을 토지이동연혁과 일치하도록 직권으로 변경하고, 같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에 잘못 기재된 내용(지번)을 직권정정하여 소유자(관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소유자(관리자)의 주소 및 거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3. 29.

강릉시



- 공고기간: 2024. 3. 29.~2024. 4. 16.(18일간)
- 공고장소: 강릉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지번 직권변경 및 정정일  
가. 지번 직권변경일  
1) 2024. 3. 21.(옥천동 47-17→옥천동 47-17, 47-57, 47-58)  
2) 2024. 3. 22.(공장: 옥천동 54-1, 54-4, 54-9→옥천동 54-1, 54-4, 54-6, 54-9)  
나. 지번 직권정정일: 2024. 3. 22. (창고: 옥천동 54-1, 54-4, 54-9→옥천동 52-8, 52-12)
-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지번 직권변경 및 직권정정  
나. 처분의 원인된 사실: 토지이동에 따른 건축물대장 지번 직권변경,  
건축물대장 오기재내용(지번) 직권정정  
다. 지번 직권변경 및 직권정정 건축물 현황

건축 위치 (기존)	지번 변경 및 정정 후	당사자		용도	층수	구조/ 지붕	연면적 (㎡)	비고
		성명	대장상주소					
※ 붙임 참조 (3건)								

라.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 유의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릉시청 건축과(☎033-640-52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번 직권변경 및 직권정정 건축물 현황 1부.  
의견제출서 1부. 끝.

□ 지번 직권변경 및 직권정정 건축물 현황

건축 위치 (기존)	지번 변경 및 정정 후	당사자		용도	층수	구조/ 지붕	연면적 (㎡)	비고
		성명	대장상주소					
옥천동 47-17	옥천동 47-17, 47-57, 47-58	용*식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47-17	주택	1층	목조/ 아연즙	133.09㎡	토지분할로 (2004.3.5.)인한 지번 직권변경
옥천동 54-1, 54-4, 54-9	옥천동 54-1, 54-4, 54-6, 54-9	용*식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47-17	공장	2층	시멘트 블록조/ 슬라브즙	485.12㎡	등록사항 회복에 (1983.12.16.) 의한 지번 직권변경
옥천동 54-1, 54-4, 54-9	옥천동 52-8, 52-12	용*식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47-17	창고	1층	시멘트 블록조/ 아연즙	159.17㎡	기재내용(지번) 직권정정

##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

###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릉시청 건축과 건축물대장부서(☎033-640-5283). 끝.